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의 책임성 강화 등 〉
■ 김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672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국민연금공단 감독 시 금융감독원장 지원 요청 근거 신설	3
가. 개정안의 내용	3
나. 검토의견	4
다. 관계 기관 의견	8
2. 보건복지부장관의 선관주의의무 규정	10
가. 개정안의 내용	10
나. 검토의견	11
다. 관계 기관 의견	14
3. 국민연금기금의 ESG 투자 의무화	15
가. 개정안의 내용	15
나. 검토의견	18
다. 관계 기관 의견	20
4. 국민연금기금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 강화	21
가. 개정안의 내용	21
나. 검토의견	24
다. 관계 기관 의견	32

5.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및 의결정족수 강화 등	35
가. 개정안의 내용	35
나.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의 거버넌스	37
다. 검토의견	40
라. 관계 기관 의견	44
6.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기능 강화 등	45
가. 개정안의 내용	45
나. 검토의견	48
다. 관계 기관 의견	50
[참고]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53

I. 개요

1. 김윤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767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윤의원 등 25인
- (2) 제 안 일 : 2026. 3. 20.
- (3) 회 부 일 : 2026. 3.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국민연금기금의 책임운용과 수탁자책임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자본시장 전반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고려한 책임 투자와 주주권 행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수탁자책임 이행의무와 위탁 운용사에 대한 평가·관리 기준, 기금운용 관련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의사결정 구조 등이 충분히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가입자·수급자의 이익 보호와 기금운용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선량한 관리자의무를 명시하고 금융당국의 협력 근거를 마련하며, ESG 요소 고려를 원칙으로 삼아 기금의 장기적·안정적 수익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기금의 일부를 금융회사

등에 위탁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위탁운용사 선정·평가·계약해지 시 수탁자 책임 활동의 질적 요소를 중점 반영하고, 미흡한 경우 위탁 계약 해지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위탁운용 구조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심의범위를 기금의 수탁자책임 이행평가, 위탁운용사 및 외부 자문기관에 대한 평가로 확대하고, 회의록의 작성·공개와 예외적 비공개 요건 및 기간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고, 책임투자·주주권 행사·수탁자책임 활동 및 위탁운용사·외부 자문기관 평가, 성과지표와 공시·보상체계를 포괄하는 수탁자책임활동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여,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전 과정에서 수탁자책임이 일관되게 구현되고 필수·장기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제102조제1항·제2항·제4항, 제102조의3, 제103조제1항·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103조의3, 제103조의4, 제105조제1항제6호 및 제105조의2 신설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국민연금공단 감독 시 금융감독원장 지원 요청 근거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현행법 제41조제3항¹⁾에 따라 국민연금 공단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을 검사하는 등의 감독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공단에 대한 감독) ① ~ ③ (생략) <u><신설></u>	제41조(공단에 대한 감독)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감독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u>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국민연금법」

제41조(공단에 대한 감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이나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의 변경을 명하는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사업을 주관하도록 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을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음.²⁾
- 가입자 기록의 관리·유지, 연금보험료의 부과, 급여의 결정·지급,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민연금공단³⁾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2호가목⁴⁾에 따른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같은 법 제51조제3항⁵⁾에 따라 사업의 적정 수행 여부와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고,

2) 「국민연금법」

제2조(관장)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제24조(국민연금공단의 설립)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3) 「국민연금법」

제25조(공단의 업무) 공단은 다음의 업무를 한다.

1.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2. 연금보험료의 부과
3. 급여의 결정 및 지급
4.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수급권자 및 수급자를 위한 자금의 대여와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사업
5.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 대여사업
6. 제6조의 가입 대상(이하 “가입대상”이라 한다)과 수급권자 등을 위한 노후준비서비스 사업
7. 국민연금제도·재정계산·기금운용에 관한 조사연구
8.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
9. 국민연금에 관한 국제협력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
11. 그 밖에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2. 준정부기관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 ③ 주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을 감독한다.

1. 법령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위탁한 사업이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2. 준정부기관의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현행법 제41조⁶⁾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공단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이나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의 변경을 명하는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공단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및 제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⁷⁾의 전문성을 국민연금공단 감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보건복지부장관은 현행법 제10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호⁸⁾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데,

국민연금기금 여유자금을 주식·채권 매매나 대체투자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업무가 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유형의 거래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6) 「국민연금법」

제41조(공단에 대한 감독)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단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2개월 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이나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의 변경을 명하는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금융감독원의 설립) ①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

8)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6조(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 위탁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2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

국민연금공단을 감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금융 분야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안 제41조제4항과 유사한 입법례로 산업통상부장관이 금융감독원장에게 한국무역보험공사 업무 등에 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인 「무역보험법」 제60조제2항⁹⁾이 있는데, 2016년 1월 6일 법률 제13734호로 공포된 「무역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의 개정이유¹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現 산업통상부)가 산업의 진흥·지원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이나 신용보증 등 금융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역량이 제한된 측면을 고려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안 제41조제4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감독 대상의 범위나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공단의 어떤

9) 「무역보험법」

제60조(보고 및 검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에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과 장부·서류·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그 결과의 보고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사에 그 시정·주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0) 법률 제13734호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 <2016. 1. 6. 일부개정, 2016. 1. 6. 시행>

◇ 개정이유

(전략)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업무 감독 및 회계와 재산에 관한 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으로 되어 있으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진흥 및 지원을 주요 임무로 하기 때문에 금융업무 검사에 관한 소속 공무원의 역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한국무역보험공사 금융업무에 대한 검사를 금융감독원도 수행할 수 있게 하여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재정 및 금융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사업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지를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둘째, 금융감독원은 예금자·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설치된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은행·금융투자업자·증권금융회사·보험회사·여신전문회사 등의 ‘금융기관’을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¹¹⁾ 무역보험이나 수출신용보증 등 ‘금융(金融)’에 관한 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한국무역보험공사¹²⁾와 달리 국민연금공단의 업무는 금융 수요자를 거래의 직접 상대방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금융기관을 검사·감독하는 데 대한 금융감독원의 전문성을 보건복지부장관의 국민연금공단 감독에 활용할 여지가 있을지가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1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慣行)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名義改書代行會社)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9.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10.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2) 「무역보험법」

제53조(업무) ① 공사는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무역보험(환율 변동과 이자율 변동이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포함한다)
2.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
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6. 그 밖에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 셋째,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 외에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 금융감독원장의 책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안 제41조제4항이 신설된다면, 금융감독원장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원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 책임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무역보험법」 제60조제3항¹³⁾에서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검사를 요청한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연금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조성된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투자업자 등을 검사·제재하는 금융감독원 업무 범위와 거리가 있고,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조성 목적을 반영한 가입자·전문가 중심의 관리·감독 체계를 따르는 것이 국민연금기금 운용 목적에 부합함.

13) 「무역보험법」

제60조(보고 및 검사)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참고로, 보건복지부장관은 현행법 제41조¹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¹⁵⁾에 따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을 일반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 안 제41조제4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별도의 감독·검사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감독상 필요성을 인정 한 경우에만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불필요한 감독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등에 대한 검사 필요 시 금융감독원장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새마을금고법」 제74조¹⁶⁾에 마련되어 있음.

14) 「국민연금법」

제41조(공단에 대한 감독)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단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2개월 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이나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의 변경을 명하는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 ③주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을 감독한다.

1. 법령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위탁한 사업이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2. 준정부기관의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16) 「새마을금고법」

제74조(감독 등) ④ 주무부장관은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에게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의 선관주의의무 규정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수급자 및 수급권자(이하 “가입자등”이라 한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는 ‘선관주의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후단 신설>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 ----- --. <u>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수급자 및 수급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가입자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는 ‘선관주의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가입자인 국민이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되는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을 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가입자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주인-대리인 관계에서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국가재정법」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¹⁷⁾에서 기금관리주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102조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선관주의의무를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있는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국가재정법」에서는 기금관리주체가 그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하고, 기금자산의 투명하고

17) 「국가재정법」

제62조(기금관리·운용의 원칙) ①기금관리주체는 그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8. 12. 31.>

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 ①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관리주체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③기금관리주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기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제64조(의결권 행사의 원칙)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기금의 이익을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고, 그 행사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효율적인 운용에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공공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기금의 이익을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주체(보건복지부장관)¹⁸⁾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는 책무에 관하여는 사실상 이미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할 측면이 있는바, 안 제102조제1항 후단의 신설이 특별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는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둘째,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 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국민연금 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¹⁹⁾

선관주의의무가 사무의 위임관계에서 수임자에게 요구된다고 규정한 「민법」 제681조²⁰⁾를 참고하여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수탁한 ‘국민연금공단’에 대하여도 선관주의의무가 요구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8)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19)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6조(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 위탁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2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
2. 법 제102조제5항에 따른 기금의 회계처리
3. 법 제102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공단이 취득한 재산의 임대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20) 「민법」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주의)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참고로, 「주택도시기금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도시기금을 운용·관리하되,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그로부터 관련 사무를 재수탁한 기금재수탁자 등의 선관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²¹⁾

□ 셋째, 법제적 측면에서는 현행법 제3조제1항제5호²²⁾에서 ‘국민연금 가입자’를 “가입자”로 약칭한 점을 고려하여 안 제102조제1항 후단의 “기금 가입자”를 ‘가입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1)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 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금융기관 등에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에 직접 위탁할 수 있다.

④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조성 및 운용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제3항에 따라 기금 사무의 일부를 재위탁 또는 위탁받은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2)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수정수용)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수탁자로서 다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명문화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은 현행법 제102조제6항²³⁾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지는 주체는 국민연금공단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23)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6조(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 위탁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2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

3. 국민연금기금의 ESG 투자 의무화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관리·운용하는 방법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²⁴⁾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대한 투융자’를 추가하면서,

같은 법 제4조²⁵⁾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을 매매 또는 대여하거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융자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 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이하 “ESG”라 한다)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⑱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3.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4.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회사”라 한다)
- 4의2. 「상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책임회사”라 한다)
5.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조합”이라 한다)
6.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
7. 삭제 <2015. 7. 24.>

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제8편부터 제10편까지의 규정 중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의 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 및 제178조·제17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본다.

1. 투자계약증권
2. 지분증권, 수익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 중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이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서의 규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현행	개정안
조제2항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5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상의 수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 ----- ----- ----- -----.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u>고려할 수 있다</u> .	④ 제2항제3호 및 제4호----- ----- ----- ----- ----- <u>고려한다</u> .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0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매매·대여·투융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증권의 매매·대여’ 외에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융자’의 방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도 ESG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기금 관리·운용의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참고로, 2015년 1월 28일 법률 제13100호로 공포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02조제4항이 같은 해 7월 29일 시행되면서 증권을 매매·대여하는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안정적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ESG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²⁶⁾

□ 다만, ESG를 고려할 수 있는 투자방법에 ‘증권 외의 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융자’(대체투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20277호)이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6. 8. 20.) 가결 후 2026년 9월 8일 현재 정부에 이송된 상황인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6. 3. 12.)에서 현행법 제102조제4항의 “고려할 수 있다”를 ‘고려한다’로 개정하는 방안에 이견이 제기되어 계속 심사하기로 한 후에 최초로 개최한

26) 법률 제13100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2015. 1. 28. 공포 2015. 7. 29. 시행>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매매 및 대여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제434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6. 4. 28.)에서
 현행인 “고려할 수 있다”를 유지하기로 의견이 모인 경과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제20277호) >

현행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제20277호)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 1. ∼ 6. (생략) <u><신설></u> <u>7.</u> (생략) ③ (생략)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외의 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u>유자</u>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제3호 및 제7호----- -----

현행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제20277호)
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⑤·⑥ (생략)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① 운용위원회는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 되도록 매년 다음 사항에 관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이하 “기금운용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 5. (생략) <u><신설></u> ② (생략)	----- ----- -----. ⑤·⑥ (현행과 같음)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①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102조제4항에 따른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별 고려 기준 및 방법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대체투자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도 장기적·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ESG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20277호)이 본회의 가결 후 공포 예정임.

4. 국민연금기금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 강화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기금의 운용업무 일부를 금융회사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02조의3제1항),

위탁운용사를 선정·평가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수익률 등 정량적 성과와 함께 책임투자 정책·조직, 의결권 행사 및 주주관계 실적 등의 질적 요소를 상당한 비중으로 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실시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점검결과 등을 반영하도록 하며(안 제102조의3제2항 및 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실태를 정기 평가하여 그 이행이 현저히 미흡한 위탁운용사에 대하여는 위탁계약 해지 등을 조치하도록 하고(안 제102조의3제4항),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와 그 밖의 수탁자 책임활동 및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02조의3(기금의 위탁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현행	개정안
<신설>	기금의 운용업무의 일부를 금융회사 등에게 위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용사를 선정·평가 또는 위탁계약의 해지를 하려는 때에는 수익률 등 정량적 성과뿐만 아니라, 책임투자 정책과 조직, 의결권 행사 및 주주관여 실적, 그 밖에 수탁자로서의 의무 이행 정도 등 질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적 평가 결과가 전체 평가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함에 있어서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실시한 의결권행사에 관한 점검결과 및 최근 3년 이내 검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이행이 현저히 미흡한 위탁운용사에 대하여는 위탁계약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5조의2(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보건복지부장관은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와 그 밖의 수탁자 책임 활동 및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 이행

현행	개정안
	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한 책임 투자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상장·비상장 주식, 채권, 대출, 부동산 등 자산군별 수탁자 책임 활동의 범위와 내용에 관한 사항 3. 의결권 행사, 비공개 대화, 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서한 발송, 주주제안, 소송 제기 등 단계적 주주권 행사 절차 및 그 절차 단축 기준에 관한 사항 4.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 이행 정도에 대한 평가기준, 평가비중, 평가방법 및 그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5. 자문기관,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외부기관의 자문의견에 대한 적절성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그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6. 기금 및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단기·장기 성과지표와 결과 보고 및 공시 기준, 그에 따른 보상체계 수립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단으로 하여금 기금 운용업무의 일부를 금융회사 등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위탁 운용사 선정·평가나 위탁계약 해지 등에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 여부 등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공단은 현행법 제103조제1항²⁷⁾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운용 위원회가 같은 법 제105조제1항²⁸⁾에 따라 마련한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이하 “「기금운용지침」”이라 한다)²⁹⁾과 ‘자산군별 위탁운용 목표 비중’에 따라 2025년 말 기준 약 747조원(전체 금융

27) 「국민연금법」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2. 기금을 관리기금에 위탁할 경우 예탁 이자율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4. 제107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내용과 사용 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8) 「국민연금법」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① 운용위원회는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되도록 매년 다음 사항에 관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이하 “기금운용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공공사업에 사용할 기금 자산의 비율
2. 공공사업에 대한 기금 배분의 우선순위
3.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
4. 기금의 증식을 위한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대여사업비
5. 제10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대상 및 방법

29)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2026. 7. 2. 시행>

제15조(위탁운용) ① 기금의 위탁운용은 외부 운용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익률을 제고하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실시한다.

- ②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직접운용과 위탁운용을 병행하되, 자산별 위탁운용 목표범위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승인한다.
- ③ 공단은 위탁운용현황을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다.
- ④ 운용사의 선정 및 관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 운용사 선정 및 관리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⑤ 공단은 위탁운용사에게 운용사간 객관적인 성과비교가 가능토록 국제성과평가기준(GIPS®)의 점진적 도입을 유도하여 향후 위탁운용사의 선정 및 관리에 활용하며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한다.
- ⑥ 공단은 운용사, 수탁사 및 평가사의 보고내용, 위탁펀드의 투자내역, 수익률, 운용사 및 펀드매니저 동향 등에 관해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 ⑦ 공단은 운용사의 위탁운용계약 준수여부 및 운용성과를 정기적으로 확인, 평가하여 해당 운용사에 위탁운용을 지속할 것인지 결정한다.
- ⑧ 공단은 제4항, 제6항, 제7항에 따른 운용사 선정, 관리 및 평가 시,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관련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부문 대비 약 51.2%)의 기금 적립금 운용을 자산운용사 등 금융 회사에 위탁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일부 위탁운용사의 경영 방침이나 수탁자 책임 이행실적 등이 시장윤리나 국민의 눈높이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개선을 요구하는 지적이 제기되어온 측면을 고려하여 기금 운용업무의 일부를 금융회사 등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탁운용사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기금의 과급효과를 감안하여 그 관리·운용의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국민연금기금 자산군별 위탁운용 현황 및 목표 비중 >

(시가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합 계	국내주식	국내채권	해외주식	해외채권	대체투자
목표 비중		-	45~65%	10~20%	45~65%	40~80%	65~99%
'25년 말	금액	7,467,238	1,341,157	2,835,388	544,064	455,271	2,291,357
	비중	51.3%	50.9%	51.5%	17.9%	44.9%	98.5%
'24년 말	금액	5,883,582	707,689	2,227,540	538,364	377,863	2,032,126
	비중	51.4%	50.6%	51.7%	15.6%	42.8%	98.2%

자료: 국민연금공단

- 그간 운용위원회는 수탁자 책임활동 정책을 갖춘 위탁운용사를 신규 선정하거나 위탁운용사에 대한 정기 평가 시 책임투자 보고서 제출 여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도입함으로써 위탁 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을 독려하여왔으나,
- 수탁자 책임활동 정책의 유무나 책임투자 보고서 제출 여부만이

형식적으로 평가되어 그 내용에 대하여는 개별적·구체적인 점검·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온 점을 고려할 때, 위탁운용사가 수탁자 책임활동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탁계약 변경·해지 등을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참고로, 2026년도 제6차 운용위원회(2026. 7. 2.)는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 수준을 우수·보통·미흡의 3단계로 평가하여 배점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자금 배분과 연계하여 이행력 확보를 위한 유인체계를 강화하려는 내용의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점검 체계 도입 방안’을 심의·의결하였고,

2026년 하반기 중 실시 예정인 위탁운용사에 대한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수탁자 책임활동 관련 질적 평가의 비중과 배점 등을 구체화할 계획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개정안에 따른 운용업무 위탁의 주체와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등의 주체가 서로 일관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안 제102조의3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단으로 하여금 기금의 운용업무 일부를 금융회사 등에게 위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및 위탁계약 해지 등의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만으로는 현행법 제102조제6항³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단에 위탁한 기금의 관리·운용 업무 중 일부를 금융회사 등에게 ‘재위탁’하는 것을 의도하는 것인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단 외의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지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공단이 수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금융회사 등에게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면, 재위탁의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면서 재위탁 시 위탁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업무를 금융회사 등에게 직접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면 제102조제6항을 개정하여 공단 외의 다른 금융기관 등에도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둘째, 안 제102조의3제2항 후단에서 위탁운용사를 선정·평가할 때 책임투자에 관한 질적 요소를 ‘상당한 비중’으로 반영하게 될 경우 기금투자수익률에 미칠 영향 등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안 제102조의3제2항은 위탁운용사 선정 시 수익률 등 정량적 성과와 함께 책임투자에 관한 질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질적 평가 결과가 전체 평가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탁운용사에 대하여 책임투자를 강화할 유인을

30)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공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현행법 제10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이 궁극적으로는 ‘수익의 최대 증대’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³¹⁾

책임투자 관련 질적 요소를 상당한 비중으로 반영하여 위탁운용사를 선정·평가하는 것이 기금의 투자수익 극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와 함께 그 기준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상당한 비중’의 의미 등에 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위탁운용사를 선정·평가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나 비중 등은 개별 위탁운용사의 특수성이나 시장 상황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법률에서 질적 요소를 상당한 비중으로 평가하도록 의무화하게 되면 탄력적 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참고로, 「기금운용지침」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수익률 제고’와 ‘위험의 분산’을 위하여 외부 운용사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위탁운용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8항에서는 위탁운용사 선정·관리·평가 시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관련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³²⁾

31)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 (각 호 생략)

32)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2025. 1. 1. 시행>

제15조(위탁운용) ① 기금의 위탁운용은 외부 운용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익률을 제고하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실시한다.

□ 셋째, 위탁운용사의 수탁자책임 활동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목적이 기관마다 서로 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운용사를 평가할 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점검·검사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안 제102조의3제3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탁운용사를 평가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실시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점검결과와 최근 3년 이내 검사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가입자등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 유지와 수익의 최대 증대를 추구하는 투자자로서의 관점은 금융산업을 선진화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려는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워 금융회사 등의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목적이 평가 주체별로 상이할 수 있는바,

평가 대상(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 여부)이 같거나 유사하다는 이유로 평가 주체·목적 등과 무관하게 다른 기관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은 본연의 평가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항까지를 고려하게 될 여지를 감안하여 재량규정으로 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②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직접운용과 위탁운용을 병행하되, 자산별 위탁운용 목표범위는 기금운용 위원회가 승인한다.

⑧ 공단은 제4항, 제6항, 제7항에 따른 운용사 선정, 관리 및 평가 시,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관련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넷째,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위탁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질적 개선에 미칠 영향과 수탁자 책임에 관한 민간의 자발적 이행 의지를 위축할 수 있는 측면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안 제105조의2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 등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단기적 관점의 근시안적 의사결정과 주인-대리인 관계에서의 이해관계 왜곡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국에서 최초 도입(2010)한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마다 투자방법·전략이나 포트폴리오 구성 등이 서로 다른 데 따라 그 도입·이행의 유연성이 보장된 연성규범(soft law) 형식의 민간 자율규범으로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12월 한국ESG기준원(비영리사단법인)을 중심으로 ‘한국스튜어드십코드’의 원칙과 지침을 제정하여 2025년 12월 현재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연기금과 60여 개 자산운용사를 비롯한 총 249개 기관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기제로 운영되고 있음.³³⁾

그런데, 한국스튜어드십코드가 민간 자율규범으로 운영되고 있어 수탁자 책임 관련 사항의 공시가 불충분하고, 의결권 행사의 목적·

33) 한국스튜어드십코드 7대 원칙: ①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정책의 제정·공개, ② 이해상충 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정책의 제정·공개, ③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주기적 점검 실시, ④ 투자대상회사와 공감대 형성 및 수탁자 책임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⑤ 의결권 행사 정책 제정·공개 및 의결권 행사내용·사유 공개, ⑥ 의결권 행사 및 수탁자 책임활동의 주기적 보고, ⑦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역량·전문성 확보

내용 등에 요구되는 책임투자 관점의 정당성 확보가 제한된다는 등의 한계가 지적되어온바,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기관 투자자 등의 책임투자 현황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공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그 이행에 관한 국내외 시장 참여자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참고로, 금융감독원이 매년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활동을 평가·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2026. 2. 12.)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832호)이 정무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다만, 각 기관투자자마다 투자방법·전략 등이 상이하여 연성규범의 형태로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당초 취지와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책임투자 확산 기반을 마련하여온 시장경제의 자율성 등을 고려할 때, 공공부문 주도의 수탁자 책임 강화가 비교적 높은 규범력을 토대로 그 확산을 촉진할 수 있는 측면과 민간의 자율·창의에 기반하여 혁신을 거듭하여야 할 금융분야에서의 국제 경쟁력 확보에 미칠 영향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민간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지를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일부수용

(안 제102조의3제1항: 수용) 기금을 금융회사 등에 위탁하여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을 명문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안 제102조의3제2항: 신중검토) 위탁운용사를 선정·평가하거나 그 계약을 해지할 때 고려하는 정량적 성과 외의 질적 요소에는 위탁운용사의 경영 안정성이나 매니저의 전문성 또는 위험(risk) 대응 체계 등이 있으며, 이는 시장 상황, 운용사별 특수성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판단되어야 하지만, 다양한 질적 요소 중 일부인 책임투자 정책과 조직, 의결권 행사 및 주주관여 실적, 그 밖에 수탁자로서의 의무 이행 정도를 법률로 정하고 상당한 비중으로 평가하도록 의무화하면 탄력적 운용을 저해할 수 있음.

(안 제102조의3제3항: 신중검토) 금융감독원은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기금의 설치목적인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확보’ 외의 목적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이 수행한 의결권 행사 점검 결과를 기금 운용에 반영하도록 법률에 정하는 것은 기금 조성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안 제102조의3제4항: 수정수용) 수탁자 책임은 위탁계약의 다양한 고려사항 중 하나로 그 이행 미흡을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것은 기금 운용에 계약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바, 위탁운용사

선정·관리 기준을 가입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운용위원회가 정하는 「기금운용지침」에 포함하도록 제105조제1항에 제7호를 신설하는 방안으로 수용함.

(안 제105조의2: 신중검토) 「기금운용지침」은 기금의 운용 목표와 투자 정책·전략을 수립하는 최상위의 지침서로서 수익성과 안정성 등 대원칙과 주요 운용전략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탁자 책임활동 등 운용전략별 각론은 그 하위의 지침으로 규정하되, 「기금운용지침」 개정 시 유동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체계 정합성 및 일관성에 부합함.

- (국민연금공단)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및 계약 해지 등의 사항은 세부 운용전략에 해당하므로 법률에 규정하기보다 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고(안 제102조의3제1항 및 제2항),

한국스튜어드십코드를 제정한 취지는 기관투자자가 고객 및 수익자 등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점검 등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안 제102조의3제3항),

위탁운용사 계약 해지 등의 판단 기준에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 결과가 반영될 수는 있겠으나 절대적 기준으로 작동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기금운용지침」에서 위탁운용의 목적과 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별도로 규정할 실익은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안 제102조의3제4항).

한편, 소송 제기의 결정권자는 법정기한을 준수하기 어렵게 될

우려 등을 고려하여 수탁자 책임활동과 밀접한 ‘주주대표 소송’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의 경우 그 결정권자를 공단 이사장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에도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은 법률에 규정하기보다 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안 제105조의2).

-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의 의결권 행사·공시 현황 등 관련 점검·검사 결과를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관계기관 간 협조를 통해 운용사를 포함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활동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유인이 될 것으로 판단됨.

다만, 법률에서 이를 직접 명시하기보다는 대통령령이나 공단 내규 등 하위법규에 반영함으로써 금융당국과의 협조 대상·내용을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5.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및 의결정족수 강화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운용위원회가 위탁운용사 선정·평가나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면서 그 기준·절차를 「기금운용 지침」에 정하도록 하고(안 제103조제1항제4호 및 제105조제1항제6호 신설),

운용위원회를 상설로 하면서 그 사무를 전담하는 사무국을 보건복지부에 두도록 하며(안 제1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8항·제9항 신설),

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한 사안을 변경하거나 미반영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제10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3. (생략) <u><신설></u>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① - ----- ----- ----- ----- <u>상설로 둔다.</u> 1. ~ 3. (현행과 같음) 4. <u>제10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한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및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u>

현행	개정안
4.·5. (생략) ② ~ ⑦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① 운용위원회는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 되도록 매년 다음 사항에 관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이하 “기금운용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 5. (생략) <u><신설></u> ② (생략)	5.·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u>운용위원회의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심의·의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운용위원회의 사무를 전담하는 사무국을 두어야 한다.</u> ⑨ 제8항에 따른 사무국의 조직·정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운용위원회는 제10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을 변경하거나 미반영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①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102조의3제2항에 따른 기금의 <u>위탁운용사 선정·평가·계약해지 기준 및 절차</u>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의 거버넌스

□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금을 관리·운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기금의 관리·운용은 운용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가 의결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³⁴⁾

운용위원회에는 그 심의·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⁵⁾

- **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과 재정경제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고용노동부·기획예산처의 차관 및 공단 이사장 등의 당연직 위원(7인)과 사용자(3인)·근로자(3인)·지역가입자(6인)를 각각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와 관계 전문가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2인) 등 총 21인으로 구성되고,³⁶⁾

34)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 (각 호 생략)

35) 「국민연금법」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심의·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이하 “투자정책전문위원회”라 한다)
2.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라 한다)
3.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이하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라 한다)

36) 「국민연금법」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② 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 당연직 위원인 재정경제부 차관·농림축산식품부 차관·산업통상부 차관·고용노동부 차관·기획예산처 차관과 공단 이사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3.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가. 농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성과 보상전문위원회는 각각 ①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연금제도 분야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하 “관계 전문가”라 한다)으로서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단체가 각각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3명, 이하 “상근전문위원”이라 한다)과 ② 관계 전문가 중에서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3명) 및 ③ 운용위원회의 위원 중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① 상근전문위원(3명)과 ② 관계 전문가 중에서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됨.³⁷⁾

□ 한편 현행법 제102조제6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³⁸⁾

나. 농어업인 단체 외의 자영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다.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4. 관계 전문가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37)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운용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의 위원은 상근(常勤)인 위원으로서 공동으로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1.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또는 연금제도 분야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이하 “관계 전문가”라 한다)으로서 법 제10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각각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2. 법 제10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용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법 제103조의3제1항제2호의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경우는 제외한다)
3. 관계 전문가 중에서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법 제103조의3제1항제2호의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경우는 6명으로 한다)

38)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공단은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기금의 관리·운용’과 ‘기금의 회계처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³⁹⁾

현행법 제103조제1항제1호 및 제105조제1항에 따라 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된 「기금운용지침」 제15조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외부 운용사의 전문성을 활용하며 수익률을 높이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위탁운용’을 실시하면서 그 현황을 운용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음.⁴⁰⁾

39)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6조(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 위탁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2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
2. 법 제102조제5항에 따른 기금의 회계처리
3. 법 제102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공단이 취득한 재산의 임대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40) 「국민연금법」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① 운용위원회는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되도록 매년 다음 사항에 관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이하 “기금운용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공공사업에 사용할 기금 자산의 비율
2. 공공사업에 대한 기금 배분의 우선순위
3.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
4. 기금의 증식을 위한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대역사업비
5. 제10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대상 및 방법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2025. 1. 1. 시행>

제15조(위탁운용) ① 기금의 위탁운용은 외부 운용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익률을 제고하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실시한다.

- ②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직접운용과 위탁운용을 병행하되, 자산별 위탁운용 목표범위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승인한다.
- ③ 공단은 위탁운용현황을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다.
- ④ 운용사의 선정 및 관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 운용사 선정 및 관리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⑤ 공단은 위탁운용사에게 운용사간 객관적인 성과비교가 가능토록 국제성과평가기준(GIPS®)의 점진적 도입을 유도하여 향후 위탁운용사의 선정 및 관리에 활용하며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한다.
- ⑥ 공단은 운용사, 수탁사 및 평가사의 보고내용, 위탁펀드의 투자내역, 수익률, 운용사 및 펀드매니저 동향 등에 관해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 ⑦ 공단은 운용사의 위탁운용계약 준수여부 및 운용성과를 정기적으로 확인, 평가하여 해당 운용사에 위탁운용을 지속할 것인지 결정한다.
- ⑧ 공단은 제4항, 제6항, 제7항에 따른 운용사 선정, 관리 및 평가 시,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관련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다. 검토의견

□ 개정안은 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면서 사무국을 두어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운용위원회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결정 사안을 변경하거나 미반영하려는 경우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중하여 그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결정이 가지는 구속력을 높이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운용위원회는 이미 상설기구인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현행법 제1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⁴¹⁾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운용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용위원회는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이미 상설위원회로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입법례⁴²⁾가 일반적인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른 합의제행정기관(행정위원회)이 아닌 자문위원회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41) 「국민연금법」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각 호 생략)

42) 「건설기술 진흥법」

제68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6조의2(가스사고조사위원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대한 가스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법률」(이하 “「행정기관위원회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常勤)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는 원칙이 규정되어 있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⁴³⁾

안 제103조제8항 및 제9항은 운용위원회의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심의·의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운용위원회의 사무를 전담하는 사무국을 두고, 그 조직·정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그런데, 「행정기관위원회법」 제10조제2항 본문에서는 자문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자문위원회인 운용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전담하는 사무국과 직원을 두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그 주된 기능이 특정 행정기관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행정기관의 소관 기능을 조정하거나 종합’하는 자문위원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직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⁴⁴⁾

43) 「정부조직법」

제5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이하 “행정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獨自性)이 있을 것
4. 업무가 계속성·상시성(常時性)이 있을 것

②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① 행정위원회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사무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자문위원회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常勤)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무 지원을 하기 곤란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①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직원을 둘 수 있는 위원회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등(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으로서 그 주된 기능이

「국민연금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사업을 맡아 주관하면서 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운용위원회의 주된 기능이 여러 행정기관의 소관 기능을 조정하거나 종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⁴⁵⁾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위원회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는 이 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⁴⁶⁾를 고려할 때 운용위원회에 사무국과 별도 정원의 직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셋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일부를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설치된 ‘심의기관’인 점을 감안하여 운용위원회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결정 사안을 변경하거나 반영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의 의결정족수를 가중할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안 제103조제10항은 운용위원회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결정 사안을 변경하거나 반영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같은 조 제5항⁴⁷⁾ 전단에 따른 의결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특정 행정기관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행정기관의 소관 기능을 조정하거나 종합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45) 「국민연금법」

제2조(관장)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4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47) 「국민연금법」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⑤ 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과반수 찬성)보다 그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의 구속력을 높이려는 취지로 이해됨.

그런데, 현행법 제103조의3제1항⁴⁸⁾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운용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할 수 있도록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운용위원회 산하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운용위원회가 ‘심의·의결’의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1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대비되는바,

‘심의기관인 위원회’는 ‘의결기관인 위원회’와 달리 그 결정이 다른 기관 등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할 때,⁴⁹⁾ 운용위원회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결정 사안을 변경하거나 반영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의 의결정족수를 가중하는 것이 심의기관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속성에 부합하는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의결정족수로 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⁵⁰⁾에서는 재적위원(9인)의 과반수인 5인이 출석한 가운데 3인만이 찬성하는 안건도 가결될 수 있는데, 운용위원회가 그 안건을 불수용하는 데 요구되는 의결정족수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가중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하여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48) 「국민연금법」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심의·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각 호 생략)

49)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 2024, 287-289면.

50)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위원회 운영 등) ④ 전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일부수용

(안 제103조: 신중검토) 운용위원회는 개최 시기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하고 있어 이를 상설화하는 것보다 그 운영을 정기화·내실화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업무의 비효율이나 책임 모호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실 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운용위원회 지원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운용위원회의 하부 전문위원회로서 그 결정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운용위원회가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

(안 제105조: 수정수용) 안 제102조의3제1항과 정합성을 맞추어 “기금 운용·관리를 위탁하는 금융기관”으로 문구를 수정하고, 위탁 운용사 관리는 고도의 탄력성이 필요한 운용전략인 점을 감안하여 ‘선정·평가·계약해지’를 법률로 규정하는 대신 ‘선정·관리 기준 및 방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공단) 현행법 제103조의3에 따라 설치된 전문위원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3제2항에 따라 3인의 상근전문위원이 소속되어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규정하기보다 운용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 적절함.⁵¹⁾

51) 「국민연금법」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심의·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이하 “투자정책전문위원회”라 한다)
2.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라 한다)

6.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기능 강화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기금의 수탁자 책임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이행 정도 평가 및 그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및 ‘외부기관 자문의견의 적절성 평가 및 그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검토·심의 사항에 추가하고(안 제103조의3 제2항제2호라목부터 바목까지 신설),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와 농어업인·자영자·소비자·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각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며(안 제103조의3제4항 단서 신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회의가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그 주요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되, 투자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거래정보 등 공개할 경우 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 공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로써 3년간(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4 신설).

3.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이하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라 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의 위원은 상근(常勤)인 위원으로서 공동으로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1.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또는 연금제도 분야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이하 “관계 전문가”라 한다)으로서 법 제10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각각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현행	개정안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생략)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문위원회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②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2. -----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u><신설></u>	<u>라. 기금의 수탁자 책임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u>
<u><신설></u>	<u>마. 기금을 국내외 자산운용사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 위탁운용사의 수탁자책임 이행 정도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u>
<u><신설></u>	<u>바. 자문기관,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외부기관의 자문의견의 적절성 평가 및 그 결과의 반영 여부에 관한 사항</u>
<u>라. (생략)</u>	<u>사. (현행 라목과 같음)</u>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
<u><단서 신설></u>	<u>다만, 전문위원회 위원 중 제10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각 목에 따른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u>

현행	개정안
<u><신 설></u>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u>제103조의4(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회의록) 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장소·심의사항·발언내용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회의가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회의록의 주요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거래정보 등 공개할 경우 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 공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의결로서 3년의 범위에서 회의록의 주요내용을 비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 범위,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u> <u>③ 제2항에 따른 비공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비공개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 부 칙 <u>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검토·심의 사항에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면서 그 구성의 측면에서 근로자·지역가입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회의록 작성·보관 및 공개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기능을 강화하면서 민주성·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개정안은 기금과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수탁자 책임은 그 의미상 ‘기금’이 아닌 기금 관리·운용의 업무를 위탁받은 ‘공단’에 대하여 요구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안 제103조의3제2항제2호라목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기금의 수탁자 책임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심의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기금은 관리·운용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관리·운용의 책임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공단에게 있는 것이므로, 수탁자 책임을 지게 되는 주체는 ‘기금’이 아닌 ‘공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그 의미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안 제10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호에서도 ‘기금의 수탁자 책임’이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탁자 책임의 주체를 기금에서 공단으로 변경하게 될 경우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안 제103조의3제4항 단서는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 ‘농어업인 단체’, ‘농어업인 단체 외의 자영자 관련 단체’,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등 근로자와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이 각 전문위원회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려는 것인데,

국민연금은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가 공동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는 데 기초하여 운영되는 사회보험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중 특정 이해관계집단의 위원 추천권을 약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관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각 전문위원회는 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이므로, 안 제103조의3제4항 단서에 따라 일부 단체의 위원 추천권을 특별히 강화하는 것이 전문위원회의 ‘전문성’에 미칠 영향에 관하여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셋째, 안 제103조의4에서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회의록의 주요 내용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내용’에 어느 사항까지가 포함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고,

현행법 제103조의2제3항에서는 운용위원회 회의록을 그 의결을 거쳐 최대 4년간 비공개하는 경우라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⁵²⁾ 수탁자책임

52) 「국민연금법」

제103조의2(운용위원회의 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장소·토의내용·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의 개최일부터 4년이 지난 후에 해당 안건의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위원회의 경우에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그 회의록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의사록’을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⁵³⁾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회의록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제출 의무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이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공단은 주요내용의 대외 공개를 전제로 회의록이 작성되는 경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의 자율성을 위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의사결정의 투명성이나 신뢰 확보의 필요성, 금융시장이나 공단의 기금 관리·운용 및 투자전략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회의록 주요내용의 공개 여부 및 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입법정책적으로 판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일부수용

(안 제103조의3제2항: 수정수용) 민간의 자율규범으로 운영되고 있는 ‘스튜어드십코드’는 그 원칙을 준수한 내역을 공시하고 미준수 시 그 사유를 함께 공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성실한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개념인 ‘이행점검’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53)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회의록 작성·비치) ①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장소·토의내용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의사록을 비공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이행 정도의 평가 및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은 고도의 자율성이 필요한 사항을 결과에 반영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운용에 제약을 야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외될 필요가 있고,

‘자문기관·회계법인·법무법인 등 의견의 적절성 평가 및 결과의 반영 여부에 관한 사항’은 한국스튜어드십코드에서 이들을 수범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법제화는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으므로 제외할 필요가 있음.

(안 제103조의3제4항: 신중검토) 전문위원회는 대표성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는 기구로서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으므로, 현재의 구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안 제103조의4: 신중검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주요 논의는 개별 기업의 상황이나 기금의 투자 현황 분석 및 수익 제고를 위한 전략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이를 포함한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⁵⁴⁾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이 공개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국민연금의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전략 노출로 이어져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고 수익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5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있으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개별 발언이 공개될 경우 기업에 대한 각 위원들의 자유로운 토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 (국민연금공단) 신중검토

(안 제103조의3) 기금 및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이나 외부기관 자문의견의 적절성 평가 및 그 결과의 반영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은 현행법 제103조의3제2항제2호가목⁵⁵⁾의 ‘주주권 행사의 원칙·기준·방법·절차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별도로 규정할 실익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안 제103조의4)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개별 기업의 비공개 주주관계 활동 계획 등 매우 민감한 시장정보를 검토·심의하므로, 그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시장에 불필요한 신호를 제공하거나 투자전략이 노출되어 기금의 운용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위축되고 의사결정의 질이 저하될 우려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6

55) 「국민연금법」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② 전문위원회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2.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주권 행사의 원칙·기준·방법·절차에 관한 사항

제1편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민연금법」 제105조에 따라 마련된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제2조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 정하는 경우 및 위탁운용사에 대해 의결권 행사방향 결정을 위임한 의결권 행사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① 기금은 기금자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한다.

② 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한다.

③ 기금은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한다.

④ 기금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할 수 있다.

⑤ 기금은 「국민연금기금 기금운용지침」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및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한다.

제4조(수탁자 책임 활동의 내용) ① 기금은 기금의 투자대상 국내외 주식 및 채권에 대해 비공개대화 및 다음 각 호의 책임투자를 이행할 수 있다.

1. 투자대상 관련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 고려

2. 환경·사회·지배구조 등과 관련한 중점관리사안 등

②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에 대해 비공개대화 및 다음 각 호의 주주권 행사를 이행할 수 있다.

1. 의결권 행사

2. 중점관리사안에 대한 비공개 대화,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서한 발송, 주주제안 등

3. 예상하지 못한 우려에 대한 비공개 대화, 공개서한 발송, 주주제안 등

4. 소송 제기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주활동은 제2항 각호를 통해 이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또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안에 대해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할 수 있다.

제5조(의사결정 주체 등) ① 기금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기금운용본부(이하 “기금운용본부”라 한다)에 설치한 투자위원회(이하 “투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한다. 다만, 의결권행사의 경우 기금의 보유지분율과 보유비중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수탁자 책임 활동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하고 그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행사한다.

1.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하기 곤란하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한 사안

2. 전문위원회 재적위원 1/3 이상이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전문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는 사안

3.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선정, 비공개·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주주제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1항에 해당하는 주주제안은 제외), 공개서한 발송 등 관련

사안(이 경우 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생략)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방법에 따라 위탁운용사에 대해 의결권 행사방향 결정을 위임하여 그 결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상장주식 발행회사가 의결권 불통일행사 수용을 번복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안에 반대하거나 주주제안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제4조제4항에 따른 수탁자 책임 활동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행사한다.
- ⑥ 기금은 수탁자 책임 활동과 관련하여 자문기관,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외부 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2편 책임투자

제6조(대상) ① 기금은 투자대상 주식 및 채권에 대해 투자의사결정과정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른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고려는 직접운용 및 위탁운용 모두에 적용할 수 있다.

제7조(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 기금은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에 관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 재무성과와 연관성 등을 고려하고, 변경내용 등은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고려 방식)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 고려는 자산군별·운용방식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3편 주주권 행사

제1장 의결권 행사

제9조(의결권 행사 대상) 기금은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에 대해 보유지분율이 1000분의 10 이상이거나, 보유비중이 국내주식의 경우 국내주식전체 대비 1000분의 5 이상인 경우, 해외주식의 경우 해외주식전체 대비 1000분의 3 이상인 경우 의결권을 행사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의결권행사시 일정 기간 거래가 제한되는 등 운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의결권행사를 하지 않기로 투자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
- 2. 투자대상회사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은 투자기구 등에 해당하고 투자규약 등에 비추어 의결권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의결권행사를 하지 않기로 투자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
- 3. 의결권행사 마감일 5영업일 이전까지 주주총회 개최 여부가 기금에 통지되지 않은 경우
- 4. 주주확정일이 의결권행사 마감일 5영업일 전보다 이후에 있는 경우, 의결권행사 마감일 전 5영업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보유지분율이 1000분의 10 미만이고, 보유비중이 1000분의 3 미만인 경우
- 5. 해외주식의 경우 지분율이 1000분의 50 미만이고 보유비중은 1000분의 1 미만인 경우
- 6.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행시기준의 기본원칙) 의결권 행시기준은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에 따른다.

- 1.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고 기금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찬성한다.
- 2.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거나 기금의 이익에 반하는 안전에 대하여는 반대한다.
- 3. 위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립[기금이 의결권을 행사할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 등을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는 기권(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제11조(안전별 세부기준) 주주총회 안전별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은 국내주식의 경우 별표 1, 해외주식의 경우 별표 2와 같다.

제12조(위임장 제공) 기금은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되 필요한 경우 주식을 발행한 회사, 다른 주주 및 위탁운용사 등에 위임장을 제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하는 위임장에 기금의 의견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중점관리사안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

제13조(중점관리사안) 중점관리사안은 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정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별표 4와 같이 정한다.

1.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2.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3. 법령상의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
4.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하였으나, 개선이 없는 사안
5. <삭제 2023.3.7.>
6. 기후변화 관련 위험 관리가 필요한 사안
7. 산업안전 관련 위험 관리가 필요한 사안
8. 그 밖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비공개대화) ① 기금은 보유지분율이 1000분의 50 이상 또는 보유비중이 국내주식의 경우 국내주식전체 대비 1000분의 10 이상이거나, 해외주식의 경우 해외주식전체 대비 1000분의 10 이상인 기업 중 제13조에 따른 중점관리사안에 해당하는 기업과 비공개대화를 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비공개대화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기업의 입장표명 요청,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정보 요청, 기업의 조치사항 확인, 개선대책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③ 비공개대화는 이사회·경영진 등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자와의 면담, 비공개서한(질의서, 의견서) 발송 등의 형태로 할 수 있다.

④ 비공개대화를 거부하거나 지속적인 비공개대화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는 경우, 별표 1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결권행사를 연계할 수 있다.

제15조(비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① 기금은 제14조에 따른 비공개대화를 약 1년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는 기업에 대하여 비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른 비공개대화를 거부하는 등 개선여지가 없는 기업은 비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즉시 선정할 수 있다.

③ 비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비공개대화를 거부하거나 지속적인 비공개대화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는 경우,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6조(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① 기금은 제15조에 따른 비공개중점관리기업이 선정연도 말까지 개선이 없는 경우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전의 경우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지 않거나, 선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른 비공개대화를 거부하는 등 개선여지가 없는 비공개중점관리기업은 전문위원회에서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즉시 선정하고, 공개할 수 있다.

③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비공개대화를 거부하거나 지속적인 비공개대화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는 경우,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7조(공개서한) ① 기금은 제16조에 따른 공개중점관리기업에 대하여 공개서한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기업의 입장표명 요청,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정보 요청, 기업의 조치사항 확인,

개선대책 요구, 이사회·경영진 등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자와 면담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른 비공개대화를 거부하는 등 개선여지가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공개서한을 발송할 수 있다.

제18조(주주제안 등) ① 기금은 제16조에 따른 공개중점관리기업이 선정연도 말까지 개선이 없는 경우,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으로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주주제안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주제안을 추진할 경우 해당 공개중점관리기업의 산업적 특성 및 기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주주제안 등을 행사하지 않거나 행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 제1호 및 제2호 중점관리사안의 경우, 전문위원회의 결정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제안 등을 우선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주제안을 추진할 경우 해당 공개중점관리기업의 산업적 특성 및 기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주주제안 등을 행사하지 않거나 행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른 비공개대화를 거부하는 등 개선여지가 없는 기업에 대하여, 기금운용위원회 결정으로 즉시 주주제안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제3장 예상하지 못한 우려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

제19조(대상) 기금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에 대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과 관련하여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20조(준용규정) 제14조, 제17조 및 제18조는 본 장에 준용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의 비공개 대화 대상기업 관련 지분율, 보유비중 등 요건 및 제18조제2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소송 제기

제21조(대표소송의 제기) ① 기금은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에 대해 기업이 이사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 등에 대한 책임추궁 등을 게을리하는 경우 기업에 대하여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기금은 기업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2조(제소의 결정) ① 기금은 제소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승소가능성, 소송에 따른 효과대비 비용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소가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대표소송의 제기를 결정할 수 있다.

1. 이사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기업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음이 관련 소송의 판결에서 확정되었는지 여부
2. 이사 등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기업에 발생한 손해액이 관련 소송의 판결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거나 객관적으로 산출 가능한지 여부
3. 기업이 자체적으로 손해의 보전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그에 따라 제소의 실익에 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른 제소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수탁자 책임활동과 관하여 전문성 있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외부 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23조(소송 의뢰)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제22조에 따라 대표소송의 제기를 결정한 경우, 기금운용본부는 제21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공단 주관부서에 소송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손해배상소송의 제기) 기금은 기금이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임직원 등의 법령 및 관련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관련법령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5조(준용규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제24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에 준용한다.

제26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소송 제기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공단 「소송사무처리 및 법률자문예규」 및 공단의 관련 내부규정에 따른다.

제4편 공시 및 제출 등

제27조(통보 및 공개) 전문위원회는 이 지침에 따라 결정한 사항을 즉시 기금운용본부에 통보하고 공개한다. 다만,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공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공시 및 제출) ① 기금운용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다만,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공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2. 상장주식 의결권 행사내역 및 세부 반대 사유. 다만, 위탁운용사가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한 경우 세부 반대 사유는 공시 제외
3. 공개중점관리기업명, 공개서한 등 중점관리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 발생 기업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 내역
4. 소송 대상, 소송 내용, 소송 제기 이유 등 소송 제기 내역
5. 기타 전문위원회가 공개를 결정한 사항
6. 상기 각호와 관련된 통계 내역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는 결정이 있을 때(제1항제2호의 경우는 주주총회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며, 제1항제6호에 따른 통계 내역은 연간공시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주총회 개최 전에 공개할 수 있다.

1. 전문위원회가 결정한 의결권 행사방향
 2. 전문위원회가 사전공개 하기로 결정한 기금운용본부의 의결권 행사방향
- ④ 제1항제5호에 따른 공개는 전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금의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형태로 할 수 있다.
- ⑤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수탁자 책임 활동 내역을 분기별로 전문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한다.

제29조(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 ① 기금운용본부는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내역 관련 통계 등을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에 포함하여 연간 단위로 작성하여 공개한다.

② 기금운용본부는 작성한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를 전문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한다.

제30조(내부통제) 기금운용본부의 준법감시기능을 담당하는 자는 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이 관련 법규 및 이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한다.

제31조(기록보관) 기금운용본부는 수탁자책임 활동내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32조(역량강화) 기금운용본부는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내외 기관투자자와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지침 검토주기) 전문위원회는 이 지침을 매년 검토하고 기금운용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필요시 검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별표 1]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

I. 재무제표 승인	
1.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적정” 이외의 의견일 경우에는 기권 또는 반대한다.
2. 이익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회사의 적정배당 정책에 의한 배당에 찬성한다. 다만, 기금운용본부가 배당관련 기업과의 대화를 추진하였으나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또는 배당금 지급수준이 회사의 이익규모, 재무상황, 투자기회, 자사주 매입 규모, 임직원에 대한 보상 및 기부금 등을 고려하여 주주가치를 훼손할 정도로 과소하거나 또는 과도한 경우 반대한다.
II. 정관 변경	
II-1. 주주의 권리 및 주주총회	
3. 회사명 변경	회사명 변경이 인지도 하락 등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 찬성한다.
4. 회계연도 변경	잘못된 회계연도 변경 등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 찬성한다.
5. 주주총회의 결의요건 변경	①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을 변경하는 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찬성할 수 있다. ② 특히 초다수결의 등 주주총회 결의요건 강화에 반대한다.
6. 주주총회 소집공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기간을 늘리는 안에 찬성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줄이는 안에 반대한다.
7. 의결주체의 변경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변경하는 안에 반대한다.
8. 다수의 정관변경	한 개의 안건으로 다수의 정관변경 내용이 상정되고 이 중 일부 내용에 대하여 반대하는 경우에는 동 안건 전체에 대하여 반대한다.
9. 의결권 대리행사자의 범위	대리인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는 안에 반대하고, 주주 이외의 자에게도 대리인 자격을 인정하는 안에 찬성한다.
10. 전자투표 및 서면투표	① 전자투표 또는 서면투표의 방법으로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 ② 주주총회에 주주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만 투표하도록 하는 안에 반대한다.
II-2. 이사회	
11. 이사회 의 규모	이사의 수에 관한 제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검토하여 투표하되,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을 제약할 만큼 이사의 수를 제한하거나 개별이사의 영향력을 무력화할 정도로 많은 이사를 두는 안에 반대한다.
12. 사외이사의 비중	사외이사의 비중을 높이는 안에 찬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낮추는 안에 반대한다.
13. 이사회 의장과 CEO의 분리	①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CEO)의 직책을 분리하는 안에 찬성하고, 분리되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합치는 안에 반대한다. ② 고위경영자[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등]가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에 찬성한다. ③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CEO)의 직책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선임사외이

사(lead director)도입 등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제안에 찬성한다.
14. 이사의 추천절차 및 자격기준
① 이사의 추천절차를 도입하거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안에 찬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추천절차를 폐지하거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안에 반대한다.
② 이사추천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비중을 높이는 안에 찬성한다.
③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가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안에 찬성한다.
15. 시차임기제
시차임기제의 폐지에 찬성하고, 시차임기제의 도입에 반대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달리 행사할 수 있다.
16. 사외이사의 임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외이사의 임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안에 반대한다.
17. 이사회 후보 투표방식에 대한 변경
이사회 후보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투표하는 방식으로의 변경에 찬성하고, 일괄적으로 투표하는 방식으로의 변경에 반대한다.
18. 집중투표제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안에 반대하고, 집중투표제 배제조항을 삭제하는 안에 찬성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 이사회 소집통지기간
이사회 소집통지기간을 늘리는 안에 찬성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줄이는 안에 반대한다.
20. 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 지침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찬성하고, 이사회 기능을 약화시키는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반대한다.
② 이 지침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내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적정수의 인원과 적정비율의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로 이사회내 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에 찬성한다.
II-3. 감사 및 감사위원회
21. 감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요건
①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상근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립하여 그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충원하는 안에 찬성한다. 다만 상법 제409조 제2항에 근거한 의결권행사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②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낮추는 안에 반대한다.
22.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피감사회사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외에 경영자문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는 안에 찬성한다.
II-4. 임직원에 대한 보상
23. 이사 및 경영진 보상
① 보상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찬성하고, 이를 번복하는 안에 반대한다.
② 보상위원회를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안에 찬성하고, 이를 번복하는 안에 반대한다.
③ 경영진의 성과와 보상을 연계하는 안에 찬성하고, 성과에 근거하지 않은 경영진 보상체계에 반대한다.
④ 이사의 재임기간 중 분식회계,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인 사실이 사후에 밝혀질 경우 부당하게 받은 보상을 반환시키는 안에 찬성한다.
24. 주식 연계 보상
①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시장요인을 고려하거나 특정 경영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상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발행허용범위 이내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계획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 ③ 사후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안에 반대한다. 다만, 증자 및 소각 등 주식가치의 변동 시 기존 주식매수선택권의 실질가치 및 기존주주의 주식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경우 찬성할 수 있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행사 유보기간을 단축하는 안에 반대한다. ⑤ 사외이사들에게 보상의 일부를 주식 혹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 전에 매도하거나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
25. 자사주 매수를 위한 회사의 대부
임직원들에게 자사주 매수를 위해 자금을 대부해주는 안에 반대한다.
II-5. 자본 구조
26. 채무재조정
채무재조정의 일환으로 보통주 혹은 종류주식을 새롭게 발행하려는 안에 대하여는 기존 주주의 권리 희석, 제안 조건, 경영권관련 쟁점,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투표한다.
27. 증권의 전환
증권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안에 대하여는 기존 주주의 권리 희석, 전환비율, 재무적 사항, 경영권 문제,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투표한다.
28. 주주의 신주인수권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약화시키는 안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주식의 발행사유, 발행가격, 발행규모, 유동성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찬성할 수 있다.
29. 종류주식
종류주식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안에 대하여는 종류주식의 의결권, 배당금, 전환권 및 기타 권리를 명백하게 하고 그 밖의 조건들이 합리적이면 찬성한다. 다만, 종류주식 발행이 기존 주주의 과도한 권리 희석, 적대적 기업인수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III. 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30. 이사의 선임
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아래의 경우에는 이사 후보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다. 1.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2.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자 3.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 4. 당해회사 또는 계열회사 재직시 명백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자 5. 당해회사 또는 계열회사 재직시 지침 제3편 제2장 및 제3장 관련 수탁자 책임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등 개선하지 않는 자 6. 이사회 참석률이 직전 임기동안 75% 미만이었던 자. 다만, 직전 임기 이사회 참석률이 75% 미만인 사유에 대하여 주주총회소집공고 등 공시서류에 이를 명시한 경우에는 달리 판단할 수 있다. <신설 2022. 2. 25.> 7. 이사회의 성별 구성과 관련한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회사의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등 이사 후보의 추천 권한이 있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장. 다만, 주주총회에 상정된 이사 후보의 성별 또는 회사의 소명 등을 고려하여 달리 판단할 수 있다. <신설 2024. 3. 28.> ② 이사 후보의 수가 선임예정 이사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더 적합한 후보에 대해 찬성한다. ③ 집중투표제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1. 사외이사의 선임
이사의 선임을 준용하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대할 수 있다.

1. 당해회사 또는 계열회사(비영리법인 포함)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 2. 중요한 지분·거래관계 등에 있는 회사(비영리법인 포함)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 <개정 2022. 2. 25.> 3. <삭제> <2022. 2. 25.> 4. <삭제> <2022. 2. 25.> 5. 그 밖에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등 회사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자
32.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은 30. 이사의 선임 및 31. 사외이사의 선임의 건을 준용한다. 다만, 상근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재선임의 경우에는 세부기준 31.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IV. 이사 및 감사의 보상
33. 이사보수한도 승인
① 이사회가 제시한 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② 보수한도 수준이 보수금액에 비추어 과다하거나, 보수금액이 경영성과 등에 비추어 과다한 경우에는 반대한다. 다만, 개별등기임원에 대한 보상 내역과 보상 체계 등 객관적으로 보상 수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사안별로 검토한다. <개정 2022. 2. 25.> ③ 지침 제13조 제2호 중점관리사안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수탁자 책임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등 개선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가 제시한 안에 반대한다.
34. 감사보수한도 승인
이사회가 제시한 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되, 보수한도 수준이 감사가 충실하게 업무를 이행할 유인을 훼손시킬 만큼 과소한 경우에는 반대한다. <개정 2022. 2. 25.>
35. 임원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지급규정 승인
①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¹⁾ 계약 등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② 지침 제13조 제2호 중점관리사안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수탁자 책임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등 개선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가 제시한 안에 반대한다.
V.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36.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①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아래의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찬성한다. 1. 시장요인을 고려하는 경우 2. 특정 경영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연간 주식연계보상 물량이 총 발행주식수의 3% 미만인 경우 ② 사후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을 조정하거나 기발행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고 행사가격을 조정하여 새로운 주식매수선택권을 발행함으로써 똑같은 효과를 추구하는 안에 대하여 반대한다. ③ 사외이사들에게 보상의 일부를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 전에 매도 또는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
VI. 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
37. 합병 및 인수
① 사안별로 검토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 ② 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반대 또는 기권 할 수 있다.
38. 영업양수도 등
① 사안별로 검토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 ② 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반대 또는 기권 할 수 있다. ③ 영업에 필요한 주요 자산을 처분하여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안에 반대한다.

39. 회사분할 및 분할합병
① 사안별로 검토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 ② 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반대 또는 기권 할 수 있다.
VII. 자본의 감소
40. 자본의 감소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안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찬성할 수 있다. 1. 회사의 회생을 위하여 자본 감소가 불가피한 경우 2. 자본조달, 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자본감소가 불가피한 경우 3. 회사의 사업축소나 폐업계획에 기금이 동의한 경우 4. 자사주 매입을 통한 소각으로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경우 5. 유상감자로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경우
VIII. 기타
41.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① 발행주식수가 비례적으로 증가(감소)하는 주식분할(주식병합)에 대하여 찬성한다. ② 상장폐지를 피하려는 주식병합에 찬성한다. ③ 법정주식수가 비례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주식병합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검토한다.
42. 주식의 제3자 배정
주식을 제3자에게 배정하는 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주식의 발행사유, 발행가격, 발행규모, 유동성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찬성할 수 있다.
43.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기업분할, 주식교환 등
사안별로 검토하여 행사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
44. 주주총회 안건의 사전공시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 임원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지급규정 승인 등 사전 검토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 5영업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 반대를 원칙으로 한다.
45. 비금융주력자 보유한도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행사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의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시, 행사지침 및 세부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안과 관련된 안건의 경우,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서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주식 수 중 비금융주력자의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 수를 뺀 주식 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한다.
46. 주주제안 <신설 2022. 2. 25.>
1. 이 지침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침을 적용한다. 2. 주주제안은 사안별로 판단하되 주주제안의 취지, 중대한 리스크의 유무, 회사의 공개 또는 대응 수준,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 3. 이사회 안과 주주제안이 경합하는 경우 기업의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하는 안건에 찬성한다.

[별표 2] 해외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

I. 재무제표 승인	
1.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적정” 이외의 의견일 경우에는 기권 또는 반대한다.
2. 이익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회사의 적정배당 정책에 의한 배당에 찬성한다. 다만, 배당금 지급수준이 회사의 이익규모, 재무상황, 투자기회, 자사주 매입규모, 임직원에게 대한 보상 및 기부금 등을 고려하여 주주가치를 훼손할 정도로 과소하거나 또는 과도한 경우 반대한다.
II. 정관 변경	
II-1. 주주의 권리 및 주주총회	
3. 회사명 변경	회사명 변경이 인지도 하락 등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 찬성한다.
4. 회계연도 변경	잘못된 회계연도 변경 등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 찬성한다.
5. 주주총회의 결의요건 변경	①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을 변경하는 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찬성할 수 있다. ② 특히 초다수결의 등 주주총회 결의요건 강화에 반대한다.
6. 주주총회 소집공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기간을 늘리는 안에 찬성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줄이는 안에 반대한다.
7. 의결주체의 변경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변경하는 안에 반대한다.
8. 연계된 안건	다수의 정관변경 안건이 일괄 상정되고 이 중 일부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경우에는 동 안건 전체에 대하여 반대한다.
9. 의결권 대리행사자의 범위	대리인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는 안에 반대하고, 주주 이외의 자에게도 대리인 자격을 인정하는 안에 찬성한다.
10. 전자투표 및 서면투표	① 전자투표 또는 서면투표의 방법으로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 ② 주주총회에 주주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만 투표하도록 하는 안에 반대한다.
11. 차등의결권 <신설 2023. 3. 7.>	차등의결권을 폐지하는 안에 찬성하고 도입하는 안에 반대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달리 행사할 수 있다.
12. 주주총회 소집요건 <신설 2022. 2. 25.>	주주들이 주주총회 소집을 할 수 있는 최소지분요건을 완화하는 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강화하는 안에 반대한다.
II-2. 이사회	
13. 이사회의 규모	이사의 수에 관한 제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검토하여 투표하되,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을 제약할 만큼 이사의 수를 제한하거나 개별이사의 영향력을 무력화할 정도로 많은 이사를 두는 안에 반대한다.
14. 사외이사의 비중	사외이사의 비중을 높이는 안에 찬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낮추는 안에 반대한다.

15. 이사회 의장과 CEO의 분리
①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CEO)의 직책을 분리하는 안에 찬성하고, 분리되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합치는 안에 반대한다. ② 고위경영자[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등]가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에 찬성한다. ③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CEO)의 직책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선임사외이사(lead director)도입 등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제안에 찬성한다.
16. 이사의 추천절차 및 자격기준
① 이사의 추천절차를 도입하거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안에 찬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추천절차를 폐지하거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안에 반대한다. ② 이사추천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비중을 높이는 안에 찬성한다. ③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가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안에 찬성한다.
17. 시차임기제
시차임기제의 폐지에 찬성하고, 시차임기제의 도입에 반대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달리 행사할 수 있다.
18. 사외이사의 임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외이사의 임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안에 반대한다.
19. 이사회 후보 투표방식에 대한 변경
이사회 후보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투표하는 방식으로의 변경에 찬성하고, 일괄적으로 투표하는 방식으로의 변경에 반대한다.
20. 집중투표제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안에 반대하고, 집중투표제 배제조항을 삭제하는 안에 찬성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II-3. 감사 및 위원회
21. 감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요건
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구성원의 3분의2 이상을 사외이사로 충원하는 안에 찬성한다. ②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낮추는 안에 반대한다.
22.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피감사회사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외에 경영자문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는 안에 찬성한다.
23. 위원회 구성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구성시 사외이사의 비율을 높이는 제안을 찬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낮추는 안에 반대한다. ②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안전에 대해 찬성한다.
II-4. 임직원에 대한 보상
24. 이사 및 경영진 보상
① 보상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찬성하고, 이를 번복하는 안에 반대한다. ② 보상위원회를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안에 찬성하고, 이를 번복하는 안에 반대한다. ③ 경영진의 성과와 보상을 연계하는 안에 찬성하고, 성과에 근거하지 않은 경영진 보상체계에 반대한다. ④ 이사의 재임기간 중 분식회계,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인 사실이 사후에 밝혀질 경우 부당하게 받은 보상을 반환시키는 안에 찬성한다.
25. 주식 연계 보상
①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시장요인을 고려하거나 특정 경영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상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발행허용범위 이내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획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 ③ 사후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안에 반대한다. 다만, 증자 및 소각 등 주식가치의 변동 시 기존 주식매수선택권의 실질가치 및 기존주주의 주식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경우 찬성할 수 있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행사 유보기간을 단축하는 안에 반대한다.
⑤ 사외이사들에게 보상의 일부를 주식 혹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 전에 매도하거나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
26. 자사주 매수를 위한 회사의 대부
임직원들에게 자사주 매수를 위해 자금을 대부해주는 안에 반대한다.
II-5. 자본 구조
27. 채무재조정
채무재조정의 일환으로 보통주 혹은 종류주식을 새롭게 발행하려는 안에 대하여는 기존 주주의 권리 희석, 제안 조건, 경영권관련 쟁점,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투표한다.
28. 증권의 전환
증권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안에 대하여는 기존 주주의 권리 희석, 전환비율, 재무적 사항, 경영권 문제,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투표한다.
29. 주주의 신주인수권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약화시키는 안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주식의 발행사유, 발행가격, 발행규모, 유동성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찬성할 수 있다.
30. 종류주식
종류주식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안에 대하여는 종류주식의 의결권, 배당금, 전환권 및 기타 권리를 명백하게 하고 그 밖의 조건들이 합리적이면 찬성한다. 다만, 종류주식 발행이 기존 주주의 과도한 권리 희석, 적대적 기업인수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III. 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31. 이사의 선임
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아래의 경우에는 이사 후보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다. 1.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2.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자 3.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 ② 이사 후보의 수가 선임예정 이사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더 적합한 후보에 대해 찬성한다.
32. 사외이사의 독립성 판단기준
다음의 사외이사는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최근 5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4. 이사·감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 및 피용자가 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8. 최대주주가 아니면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9. 해당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해당 상장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 밖의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 10. 그 밖에 회사와의 직·간접적 이해관계로 인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자
33. 사외이사의 선임
이사의 선임을 준용하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대할 수 있다.

1. 제30조 사외이사의 독립성 판단기준에 의거하여 독립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 자
2. 이사회 참석률이 저조한 자
3. 당해 회사에 사외이사로 재직할 연수가 과도하게 장기인 자
34.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은 29. 이사의 선임 및 31. 사외이사의 선임의 건을 준용한다.
35. 외부감사인의 선임
① 외부감사인을 재선임하는 안건과 외부감사인에 대한 보수 책정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하는 안건에 대해 다음의 사유가 없는 경우 찬성한다. 1. 회계장부나 감사절차에 있어서 심각한 우려가 있는 경우 2. 충분한 설명 없이 외부감사인이 교체되는 경우 3. 감사용역에 대한 보수가 유사기업 평균에 비해 크게 높거나 비감사용역에 대한 보수가 전체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은 경우 ② 외부감사인의 임원이 해당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였거나 회사와 관련된 업무로 인해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외부감사인 선임에 반대한다.
IV. 이사 및 감사의 보상
36. 주요임원보상에 대한 권고안건
주요임원에 대한 보상을 주주총회의 권고안건으로 하는 제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보상에 대한 공시수준, 보상의 성과와의 연계성, 보상의 수준 등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경우 반대할 수 있다.
37. 이사(임원)보수 승인
① 이사회가 제시한 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② 보수한도 수준이 경영성과 등에 비추어 과도한 경우에는 반대한다. 다만, 개별등기 임원에 대한 보상 내역과 보상 체계 등 객관적으로 보상 수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사안별로 검토한다. <개정 2022. 2. 25.>
38. 감사보수한도 승인
37. 이사(임원)보수 승인을 준용한다.
39. 임원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지급규정 승인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계약 등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V.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40.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①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아래의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찬성한다. 1. 시장요인을 고려하는 경우 2. 특정 경영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연간 주식연계보상 물량이 총 발행주식수의 3% 미만인 경우 ② 사후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을 조정하거나 기발행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고 행사가격을 조정하여 새로운 주식매수선택권을 발행함으로써 똑같은 효과를 추구하는 안에 대하여 반대한다. ③ 사외이사들에게 보상의 일부를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 전에 매도 또는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
VI. 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
41. 합병 및 인수
① 사안별로 검토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 한다. ② 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반대 또는 기권 할 수 있다 .
42. 영업양수도 등
① 사안별로 검토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 ② 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반대 또는 기권 할 수 있다. ③ 영업에 필요한 주요 자산을 처분하여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안에 반대한다.

43. 회사분할 및 분할합병
① 사안별로 검토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 ② 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반대 또는 기권 할 수 있다.
VII. 자본의 감소
44. 자본의 감소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안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찬성할 수 있다. 1. 회사의 회생을 위하여 자본 감소가 불가피한 경우 2. 자본조달, 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자본감소가 불가피한 경우 3. 회사의 사업축소나 폐업계획에 기금이 동의한 경우 4. 자사주 매입을 통한 소각으로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경우 5. 유상감자로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경우
VIII. 기타
45.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① 발행주식수가 비례적으로 증가(감소)하는 주식분할(주식병합)에 대하여 찬성한다. ② 상장폐지를 피하려는 주식병합에 찬성한다. ③ 법정주식수가 비례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주식병합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검토한다.
46. 주식의 제3자 배정
주식을 제3자에게 배정하는 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주식의 발행사유, 발행가격, 발행규모, 유동성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찬성할 수 있다.
47.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기업분할, 주식교환 등
사안별로 검토하여 행사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
48. 주주총회 안건의 사전공시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 임원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지급규정 승인 등 사전 검토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일 전에 그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 반대를 원칙으로 한다.
49. 관계자 거래
관계자와의 거래 승인은 사안별로 판단하되 이해관계의 정도, 거래의 공정성 및 적정성, 사외이사 및 독립적인 재무전문가의 판단 등을 고려하여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경우 반대한다.
50. 주주제안 <신설 2022. 2. 25.>
1. 이 지침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침을 적용한다. 2. 주주제안은 사안별로 판단하되 주주제안의 취지, 중대한 리스크의 유무, 회사의 공개 또는 대응 수준,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 3. 이사회 안과 주주제안이 경합하는 경우 기업의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하는 안건에 찬성한다.